

서울특별시 시민여가활성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설 명

- 존경하는 황규복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!
안녕하십니까? 안 광 석 의원입니다.
- 본 의원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시민여가활성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.
- 최근 「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」 제14조가 개정됨에 따라 18세 미만 아동이 장기간의 학습 부담에서 벗어나 적절한 여가를 보장받고 아동들이 이용하는 청소년 시설을 여가교육 시설로 지정하여 여가교육을 실시할 필요성이 있습니다.
- 이에, 본 의원은 「서울특별시 시민여가활성화 기본 조례」의 제9조제5호에 “18세 미만의 아동”을 추가하고, 제10조제1항제4호에 “「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청소년 시설”을 추가하는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.

-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